

국토환경 관련 법제도의 동향과 대응방안

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 생태환경건축학회장, 한국 인공지반녹화협회장,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대표

I. 국토환경 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

1. 도시공원법 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칭

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제도의 도입(제5조 내지 제10조)

- (1) 도시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20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도시 내 공원녹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려는 것임.
-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10년 단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함.
- (3) 도시의 특성과 실정을 감안한 공원녹지에 관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도시민의 쾌적하고 양호한 생활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나.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제도의 도입(제12조 및 제13조)

- (1) 도시의 개발로 이용 가능한 녹지는 점점 감소하고 도시 내 녹지공간의 상당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으나 개인 소유 녹지는 이용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계약에 의해 도시의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도시민에게 필요한 휴식공간을 확대

제공하려는 것임.

-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안의 식생 등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묘목제공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3)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지역 주민이 공원녹지 확충 및 도시녹화에 상호 협력하여 도시의 녹지 환경을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도시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마련(제14조)

- (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사업계획·택지개발사업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계획이 반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사업별로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일정한 규모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당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도록 함.
- (3) 사업별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와 함께 도시공원과 녹지가 안정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원조성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제16조)

- (1)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이미 지

방의회 의견청취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에도 그 세부 집행계획인 공원조성 계획 결정시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 법에 의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도록 함.
- (3) 공원조성계획 수립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조기에 공원조성이 이루어지고, 공원조성계획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도시공원결정의 실효제도 도입(제17조 및 부칙 제8조)

- (1) 도시공원이 결정된 후 세부 집행계획인 공원조성 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지 않아 토지의 사적이용이 제한되는 등 일반 국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 (2)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때에는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도록 하고,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결정된 도시공원은 그 실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으로 함.
- (3) 도시공원의 조기 조성을 유도하고 도시공원내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제도 신설(제26조 내지 제34조)

- (1) 도시자연공원은 공원으로 결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조성된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도시자연공원 내에서의 엄격한 행위 제한이 수반되어 거주자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도 구역으로 신설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해

제의 기준을 정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제한된 행위에 대하여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의 토지로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함.

- (3)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51조)

- (1) 현행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이용·건축·교통·환경·방재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를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가 어려워 공원녹지 분야를 전문적·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려는 것임.
- (2) 공원조성계획·도시녹화계획 등의 심의와 공원녹지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공원녹지에 관한 전문적 석견이 있는 자들로 도시공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 (3) 도시의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과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됨.

- 아.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도시공원·녹지의 조성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조).

- 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라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 일부에 대하여 원활한 도시녹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11조).

- 차. 도시공원을 생활권공원(3종-소공원, 어린이공원, 균린공원) 및 주제공원(6종-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조례가 정한 공원)으로 구분하고, 녹지에 녹도를 추가하는 등 도시공원·녹지체계를 개편함(제15조).

카. 도지사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자연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봄 (부칙 제6조).

2. 경관관련법규의 정비

건설교통부는 미래형 지속가능한 국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미관과 자연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다고 1월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경관법(가칭)'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해 건축물 외관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법은 다음달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새로 짓는 건축물 모양과 층수뿐만 아니라 간판 색깔과 개수도 규제를 받게 된다. 규제 내용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물 색깔이나 모양, 층수, 주변지역과 조화, 스카이라인, 간판 색깔과 모양, 개수 등과 관련해 정부와 협정을 맺도록 하고 이 협정을 따른다는 조건 아래 건축허가를 내 주게 된다. 정부와 건축주가 맺게 되는 협정이 건축물의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하게 되는 것이다.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

가. 기업도시 유형

'기업도시'라 함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에 한하여,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 · 연구 · 관광 · 레저 · 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 · 교육 · 의료 · 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기업주도, 복합도시, 자족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 (2)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 (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 · 레저 · 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 (4)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지방이전 공공기관(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한한다)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기업도시

나. 사업추진주체

□ 민간 단독개발 (단일 민간기업, 민간 + 민간)

① 기존 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

- 시행자 지정요건 : 자기자본비율 +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
- 조성토지 직접사용 : 시행자가 일정비율 토지를 직접사용
- 토지수용권 : 토지면적의 50% 이상 확보 후 수용 재결 신청
- * 토지확보 :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얻은 경우

②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 설립 방식

- 시행자 지정요건 : 자기자본비율만 충족
- 조성토지 직접사용 : P.C에 출자한 모기업이 조성 토지 직접 사용
- 토지수용권 : 토지면적의 50% 이상 확보 후 수용 재결 신청

◆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조성되는 산업용지의 직접사용비율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체 또는 건설업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 설비투자가 가능한 제조업체와 개발사업의 경험이 있는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 민+관 합동개발 (민간 + 공기업, 민간 + 지방공사, 민간 + 지자체)

- 단일기업과 공공주체, 다수 민간기업과 공공주체의 합동개발이 모두 가능 (민간지분은 50% 이상, 공공 최소지분제한은 없음)

- 공공협력으로 도시계획수립, 주민보상 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
- 토지수용권 제한 없음 (토지면적 50% 확보 선행조건 불필요)

다. 최소개발규모

- 산업교역형 500만m², 지식기반형 330만m²
- 관광레저형 660만m², 혁신거점형 330만m²(예외로 165만m² 이상 가능)
- * 산업교역형의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 검토중

라. 산업용지 조성비율과 산업용지중 시행자의 직접사용비율

	산업 교역형	지식 기반형	관광 레저형	혁신 거점형
가용지중 산업용지 비율	40%	30%	50%	30%
산업용지중 직접사용비율	30%	20%	50%	30%

* 도시개발시 가용지는 통상 50% 수준 (나머지는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

마. 개발입지

① 입지선택시 일반적인 고려사항

-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지자연도 7등급 이상인 지역은 개발 곤란

② 기업도시 입지선택시 중점고려사항

- 우선배려 : 낙후지역,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 제외지역 : 수도권·광역시(군(郡))지역은 지정대상에 포함), 대규모사업 집중 지역(위원회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고시), 낙후도 6, 7등급에 해당하는 지역(혁신거점형 등 예외인정)

바. 개발이익 환수율 : 낙후도에 따라 차등화

1등급 (심함)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낮음)
25%	40%	55%	70%	85%	100%	

* 개발이익 환수율을 일부 완화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4. 시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주요 내용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가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등에 관하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8조·제9조 및 제14조).

나. 행정도시건설을 위한 예정지역은 연기·공주지역에 지정되되, 자연지형·환경성·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도록 함(제11조·제12조).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이전방법 및 시기 등이 포함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계획을 수립하되, 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여성부가족부를 제외하도록 함.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함(제16조).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행정도시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7조).

바.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행정도시건설사업은 정부 투자기관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필요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 사. 건설교통부장관은 행정도시개발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청장은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9조·제20조).
- 아. 예정지역의 지정시점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시점으로 보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제24조).
- 자. 행정도시건설업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부처장관과 민간인 등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제29조 내지 제31조).
- 차. 행정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설치하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제38조·제39조).
- 카. 행정도시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청장이 관리·운용하는 행정도시 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제44조·제45조).
- 타. 행정도시건설과 관련하여 공공 건축물의 건축 및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8조5천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51조).
5.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입법예고(안)
- 가. 이 법은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국민과 기업, 정부 그리고 각지의 자생적 공유화 운동 주체들이 서로 힘을 모아 범국가적으로 신탁·관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끊임없이 물려주고 공공신탁의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조).
- 나.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자산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이라 한다) 법인을 설립.
- 다. 국민신탁의 적용범위와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국민신탁은 신탁재산의 체계적인 확보·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단위재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계획과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전협의하도록 함(안 제3조 내지 제8조).
- 라. 신탁관계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계약 및 해지 사항, 신탁방법 등 신탁재산의 관리에 대한 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내지 제13조).
- 마. 신탁재산은 그 재산가치가 저하되어 국민신탁에서 그 처분이나 양도 등을 요청하여 환경부장관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이나 양도를 제한함(안 제16조).
- 바. 국민신탁은 신탁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입장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신탁의 예산·결산·감사에 관한 사항은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모든 신탁재산은 관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공시하도록 함(안 제18조 내지 제20조).
- 사. 국민신탁의 신탁재산은 미래세대에 대한 공유화 재산이므로 신탁재산의 취득, 보유, 처분 등과 관계되는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하고, 국민신탁에 신탁한 자에게는 당해 신탁재산에 대한 중여세 등을 면제하며, 국민신탁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내지 제23조).
- 아. 국민신탁의 조직기구와 신탁회원 및 활동회원의 지위를 정하며, 국민신탁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회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 자. 국민신탁은 보전가치가 큰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으로 설정되지 않더라도 그 소유자나 점유자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 협약 등에 대한 손실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내지 제32조).
- 차. 신탁재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농지법상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신탁재산의 법적안정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유보함
(안 제33조 및 부칙 제3항).

6.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정

첫째,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야생 동 · 식물과 그 서식환경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 · 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 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관할구역의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게 된다.

- 계획의 주요 내용 : 야생 동 · 식물의 현황 및 전망, 서식지 실태조사, 보호 기본방향 및 목표, 주요 추진과제 및 시책, 보전 · 복원 및 증식, 특별보호 구역 지정 관리, 재원조달방안 등.
- 둘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야생동 · 식물특별보호 구역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 야생동 · 식물보호구역을 지정 · 관리하는 보호구역지정 제도가 시행된다.
- 아울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조수보호구(544개소 1,397km²)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변경되어 야생조수뿐 아니라 야생동식물 전체가 보호관리된다.
- 셋째, 뱀 · 개구리 등 양서 · 파충류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보신용 포획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드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멸종위기종뿐 아니라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하여 함부로 잡으면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양서 · 파충류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였다.
- 국내 서식하는 43종의 양서 · 파충류 중 구렁이 등 6종은 멸종위기종으로, 살모사 · 산개구리 등 26종은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아주 흔하거나 보신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등 11종은 포획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멸종위기종(6종) : 구렁이,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표범장지뱀, 비바리뱀
- 포획금지(26종)
- 양서류 10종 : 아무르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도롱뇽, 제주도롱뇽, 고리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 파충류 16종 : 유혈목이, 실뱀, 능구렁이, 대륙유혈목이, 쇠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 먹대가리바다뱀, 바다뱀, 줄장지뱀, 누룩뱀, 무자차, 자라, 바다거북, 장수거북, 도마뱀
- 포획금지 제외(11종) : 옴개구리, 참개구리,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북두꺼비, 네발가락도롱뇽, 도마뱀붙이, 장지뱀, 아무르장지뱀, 줄꼬리뱀, 북살모사

- 넷째, 종전에는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과 보호 야생동 · 식물로 구분하여 지정 관리하여 왔으나 이제부터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 위기 야생동 · 식물 I · II급으로 나누어 지정 · 관리된다(보호야생동 · 식물지정제도는 폐지됨).
- 기존에 194종의 멸종위기종(43종) 및 보호종(151종) 중 전국적으로 서식 · 분포하는 등 멸종위기 우려가 없는 13종은 제외하고 멸종위기 상태에 있는 40종을 추가하여 총 221종을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1급 50종, II급 171종)로 지정하였다.
- 다섯째,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및 그 가공물(음식 품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 자 처벌 제도를 도입하였다.
- 먹는 자 처벌대상 동물은 모든 야생동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밀렵되어 식용으로 사용되는 맷돼지, 고라니, 사향노루, 물개, 가창오리, 구렁이, 살모사, 산개구리 등 32종이다.
- 밀렵된 야생동물의 먹는 자 처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밀렵의 수요를 차단하여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여섯째, 멸종위기 야생동 · 식물과 포획금지 야생동식물을 인공 증식하여 수출 · 가공 · 유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공증식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였다.
-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의 경우 학술연구기관 등이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포획 · 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인공증식기술을 먼저 확립하여야 하며, 수출 · 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기관으로부터 개체를 분양 받아 적정한 인공증식시설을 갖추어 증식하여야 한다.
- 그리고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 · 반출 · 가공 · 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해서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인공증식증명서사본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또한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 중 산개구리 등 11종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를 받아 인공증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합리적 보호·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공증식대상 야생동물 :

다람쥐, 청동오리, 흰뺨검둥오리, 물닭, 쇠물닭,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7.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

가.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개편(안 제2조제11호)

- (1) 종전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는 생태계보전에 치중하여 강변, 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2)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를 자연경관을 포함시킨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제도로 확대 개편함.
- (3)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시기의 조정(안 제8조)
종전에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10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 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시기를 10년으로 조정함.

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세분화 등 관련제도 개선 (안 제12조 내지 제16조)

- (1) 종전에는 보전지역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인 행위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그로 인한 신규지정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2)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상태 및 보전가치 등을 기준으로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구분·지정하고,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대한 제한을 달리하는 등 구역별로 행위제한을 차등화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며, 제도 운영상 실효성이 미흡하고 지정실적이 없는 출입제한 및 임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함.

- (3)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과도한 불편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향후 보전지역의 지정이 활성화되는 등 보전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연경관영향의 심의제도 도입(안 제28조 및 제29조)

- (1) 산간계곡, 강변, 해변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세워지는 건축물 등이 주변경관과 조화되지 아니하여 미관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2) 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자연공원 주변 지역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 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함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경관의 보전방안에 대하여 검토·심의하도록 함.
- (3) 건축물 등의 배치, 높이, 모양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기대됨.

마. 생태마을의 지정 및 지원(안 제42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생태를 잘 보전하고 있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소득증대방안 마련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바. 자연환경안내원 근거규정 마련(안 제59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연환경안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8. 자연공원법 개정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자연공원 지정관리제도 정착화를 위해 환경부장관의 도립공원 지정승인 및 도지사의 군립공원 지정승인제도를 폐

- 지함.
- 나. 다른 법률과 용도지구 용어가 유사한 "자연보존지구 · 자연환경지구 · 자연취락지구 · 밀집취락지구 · 집단시설지구"를 각각 "공원자연보존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자연마을지구 · 공원밀집마을지구 · 공원집단시설지구"로 변경함.
 - 다.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지역주민의 임 · 수산물 채취를 허용하고 도서지역 지역주민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묘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라. 자연공원지정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
 - 마. 공원구역내의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이중허가제 폐지(안 제21조).

II. 국토환경관련법규 제(개)정에 따른 조경분야의 대응방안

1. 도시공원법의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개정된 도시공원법은 공포 6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동안 조경분야에서 착실히 준비를 한다면 법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열매를 조경분야에서 따먹을 수 있을 것이다.

가.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
 10년 단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전국 도시에서의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업무가 발주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조경분야에서 특히 조경계획 및 설계용역회사와 설계사무소에서 소화시키지 못하면 인접 전문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법시행 초기에 조경분야에서 이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면 자칫하다가 타 분야로 업무를 빼앗길 가능성도 많다.

나. 도시공원위원회에 적극적 참여

전국 각 도시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가 법적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져 법적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도시공원

의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교의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도시공원업무가 조경분야의 업무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도시공원녹지 확충에 따른 조경시공물량의 확대에 대비

도시공원법의 개정으로 도시공원녹지가 대폭 확충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경시공물량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경시공분야에서도 공사물량 확대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응방안

가. 기업도시의 개발에 따른 조경수요의 확충에 대한 대비

기업도시가 개발되면 도시개발에 맞추어 공원녹지가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경설계와 공사의 수요도 동시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 특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골프장이나 관광시설이 입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광시설계획이나 설계, 관광지 조경공사 등의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경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조경설계나 시공 준비를 축실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도시를 개발하려는 개발 주체 기업과도 긴밀한 연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리라 본다.

나. 기업도시개발주체에 참여

기업도시는 기업이 개발주체가 되어 기업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와도 공동개발이 가능하며 여러 개의 기업들이 별도의 프로젝트회사를 만들어 개발주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경분야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주체로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대응방안

가. 행정복합도시의 계획과 설계에의 참여

나. 행정복합도시의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제시
 다. 행정복합도시의 공원녹지의 시공에의 참여

4. 기타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가. 자연경관영향 평가업무에 참여

나. 내셔널 트러스트(국민신탁) 운동에 참여